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5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신동욱 · 강대식 · 박상웅
박준태 · 권성동 · 추경호
서지영 · 송언석 · 조정훈
유상범 · 곽규택 · 김재섭
송석준 · 나경원 · 조배숙
김도읍 · 구자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

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제417조, 제432조의3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數),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를 “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로 한다.

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4조의4(의결권의 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1주당 의결권의 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69조의 제목 “(議決權)”을 “(의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4에 따라 발행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③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

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신주발행을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5.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뜻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3항제5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

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50조제2항, 제516조의

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

③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증서 및 신주인수선택권원부) ① 제432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하여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선택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43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432조의4제2항의 경우, 제432조의4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까지의 사항
4.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주인수선택권자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지게 되

는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각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신주인수선택권증서의 번호

4. 각 신주인수선택권의 취득 연월일

④ 이사는 회사의 신주인수선택권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신주인수선택권자,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신
주인수선택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
선택권원부에 관하여는 제356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2조의9(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
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제432조의10(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의11(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10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4조, 제344조의4 및 제3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생략)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의4. (생략) <u><신 설></u> 4. ~ 12. (생략) ③ · ④ (생략)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u>상환</u>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의4. (현행과 같음) <u>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u> 4. ~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 ----- -----<u>제417조, 제432조의3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u>----- -----. 제344조(종류주식) ① ----- ----- ----- <u>의결권의 수(數), 상환</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신설>

③ -----

-----소각,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4(의결권의 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1주당 의결권의 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4에 따라 발행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신 설>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황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③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신주발행을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5.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뜻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

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금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

<신 설>

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
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
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
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
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
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
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
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
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
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
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
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신 설>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3

항제5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
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
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
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
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
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
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신 설>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신 설>

<신 설>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50조제2항, 제516조의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

③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증서 및 신주인수선택권원부) ① 제432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자

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
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하여 신
주인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으로 신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선택권증
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
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증서라는 뜻
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43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432조의4제2항의 경
우, 제432조의4제2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사항

4.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
기관의 납입장소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원부
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주인수선택권자가 신주인

<신 설>

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
지게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각 신주인수선택권자에게 신
주인수선택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신주인수선택권증
서의 번호

4. 각 신주인수선택권의 취득
연월일

④ 이사는 회사의 신주인수선택권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
야 하고, 주주와 신주인수선택권자,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신주인수선택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 원부에 관하여
는 제356조의2에서 정하는 전
자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432조의9(신주인수선택권의 등
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
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

<신 설>

<신 설>

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제432조의10(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의11(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 (생략) 3. <u>第402條 또는 第424條에 定하는 權利의 行使</u> ② (생략)	<u>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u> ② <u>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u>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10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u> ② (현행과 같음)
---	--